

「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(바이오)」 수혜기업 모집 공고

(재)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『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(바이오)』 사업을 통한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해양수산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해양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·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전국의 기업·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01일

서천군수 · (재)충남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(바이오)
- 지원기간 : 2023. 11. 01. ~ 2024. 4. 30.
- 사업주관 : (재)충남테크노파크
- 지원대상 : 전국 해양수산 전후방 기업 및 관련 기관
 - ※ 지원 대상 기업은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, 서천군, 충청남도 중 한곳에 소재하고 있거나 5년 이내 건립 또는 이전완료 해야함

■ 사업목적

- 해양바이오 기업의 서천군 및 충청남도 내 유치, 미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

■ 사업내용

세부과제	세부내용
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	해양생물자원(식물, 동물, 미생물, 수자원 등)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효능·성능을 지닌 전략소재 개발 및 시제품화
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	해양생물자원(식물, 동물, 미생물, 수자원 등)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 시제품 개발 ※ 핵심 성능(성분, 효능 등)이 규명된 기존 소재 활용 가능

■ 지원내용

내역사업명	지원 과제수	과제당 지원금	지원기간
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	1건 내외	70,000천원 내외	협약체결일로부터 2024.4.30.까지
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	1건 내외	55,000천원 내외	

※ 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※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하였거나, 지원 중인 중복과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

■ 세부사항 : [붙임1]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

2. 신청자격

■ 단독 참여

-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, 서천군, 충남도로 이전 가능하거나 서천군 또는 충남도에 소재한 해양바이오 전후방기업으로써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

■ 공동 참여

- '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'와 '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, 서천군, 충남도로 이전 가능하거나 서천군 또는 충남도에 소재한 해양바이오 전후방 기업'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

<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>

1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
4. 국립·공립 연구기관
5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6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
7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

3. 신청방법

■ 공고 및 접수기간

- 공고기간 : 2023. 11. 01.(수) ~ 2023. 11. 20.(월)
- 접수기간 : 2023. 11. 16.(목) ~ 2023. 11. 20.(월), 18시 까지

■ 신청방법

- 신청서 접수 :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는 접수 받지 않음
- 신청서(양식)교부 : 사업계획서 양식, 제출서류 등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ctp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- 신청서 제출처 :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(예산)
- 주 소 : 충남 예산군 삼교읍 산단3길 226,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1층

■ 제출서류

No	신청서류	부수	비고
①	신청 공문(발신처:신청기업, 수신처:충남테크노파크)	1부	필수
②	연구개발계획서	8부 (원본1부 사본 7부)	필수
③	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※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	1부	필수
④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	1부	해당시
⑤	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(최근 3년치)	1부	필수
⑥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1부	필수
⑦	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※ 상품화 공정개발 지원기업은 필수	1부	해당시
⑧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1부	필수
⑨	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협약서	1부	필수
⑩	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	1부	해당시
⑪	주사무소, 생산시설(공장), 연구시설 이전 및 건립 예정 확인서	1부	해당시
⑫	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	1부	필수

4. 선정기준 및 절차

■ 선정기준

- 평가점수는 연구계획의 적절성(연구목적의 타당성, 세부수행 계획의 구체성, 선행연구실적 등), 추진체계 및 연구역량의 적합성(연구개발 조직, 인력현황, 전문성 및 시설·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등), 연구성과 활용계획(사업화·실용화 가능성, 시장 진입 계획 등) 등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
- 지원 대상기업(기관) 선정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후,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(발표평가)하여 최종종합평가점수(우선지원대상 반영)가 최고점인 신청기관을 선정
 - ※ 단,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
-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(100점 만점)를 산술평균한 점수이며,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우선지원대상을 반영한 점수임
- 우선지원대상 항목
 - 충남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및 건립 희망기업 우선 선정

순 위	지원대상	가점
1순위	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본사, 공장, 연구소를 이전 및 건립하기 희망하는 기업	10
2순위	서천군에 본사, 공장,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	5
3순위	충남도에 본사, 공장,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도내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	0

※ 3순위의 경우, 연구개발비의 30% 이내로 한정

※ 최근 5년간 각종 국·도비 지원 실적이 없는 **신규기업*** 지원 시 2점 가점

* 특정업체에 대한 보조사업 특혜 및 집중 지원 방지

* 단, 신규 기업 해당 지원자가 없는 경우 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예정

※ 지역대표 수산물(해삼, 김 등)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용소재 활용 시 2점 가점

* 세부 가점 내역은 각 세부사업 RFP 참조

○ 평가항목 및 내용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연구계획 (40%)	·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잘 이해하고 있는가?	10
	·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(연구동향/시장현황/정책동향/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)는 충실하며, 연구계획에 반영되었는가?	5
	· 연구개발 목표/내용/방법 등 연구계획은 구체적이며,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?	15
	· 최종목표 및 연차(단계)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?	10
추진체계 (20%)	·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,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?	10
	· 세부과제의 역할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?	10
연구역량 (30%)	·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?	10
	·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?	10
	· 연구책임자는 최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?	10
성과활용계획 (10%)	·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?	10
합계		100

○ 사전검토 : 관리기관의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포함

※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과제수행 적합성 조사(전문가 1~2인 및 간사)

○ 평가방법 : 발표평가(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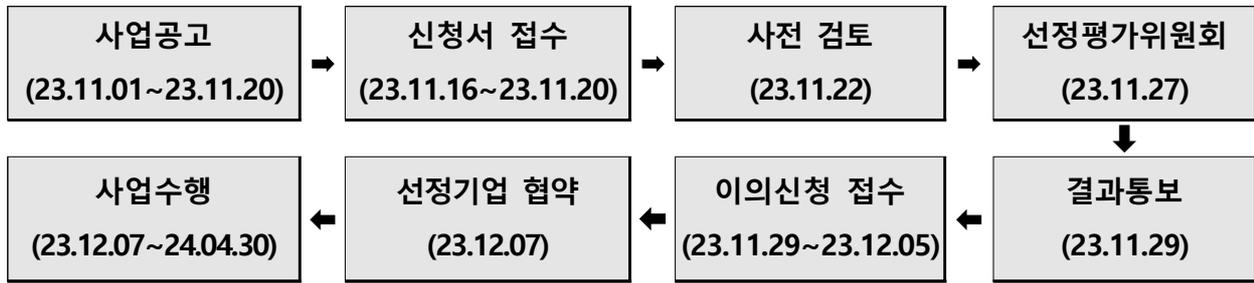
※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예정

■ 우선지원대상 가점 항목

구분	기준	점수
본사/공장/연구소 이전 또는 건립 시 신규 고용인원	신규고용 1명 당 1.0점 ※ 가점: 최대 5명/최대 5점	1.0점~5.0점
본사/공장/연구소 이전 또는 건립 시 상주인원	상주인원 5명 당 1점 (이후 5명 추가당 +1점) ※ 가점: 최대15명/최대 3점	1.0점~3.0점

※ 가점항목은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일 때 적용함

■ 선정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■ 이의신청

- 이의신청은 평가결과에 대해 중대한 평가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,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(자유양식)제출 가능

5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-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 -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- ※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제8조(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) 제1항
-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
 - 연구개발계획서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
 - ※ 협동·공동·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 과제 참여가 가능함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에 따라,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,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. 다만, 동 규정 제2항1~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

<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 제2항의 각호>

1. 제6조제4항에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2.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3.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4.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(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)
5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

○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다만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

○ 참여기관(기업)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의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6. 참여기업 부담기준

■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

구 분	참여기업 부담 기준	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
중소기업	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	총 부담금액의 10% 이상
중견기업	총 연구개발비의 30% 이상	총 부담금액의 13% 이상
대기업 및 기타	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	총 부담금액의 15% 이상

○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규정」의 참여기업 민간부담 현금·현물 비율

※ 총 연구개발비 = 지원금 + 기업부담금(현물, 현금)

- '대기업'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정의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
※ 개발 완료 후 별도의 기술료 납부 없음

7. 유의사항

■ 유의사항

-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,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중복지원여부, 면담/현장실태조사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 신청 취소함
-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선정기업 후 유의사항

항목	해당 조건	필수
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기업(본사, 공장, 연구소 택 1) 이전 또는 건립	협약일로 부터 1년 이내 부지매입, 3년 이내 착공	이전 또는 건립 후 최소 3년 동안 유지
서천군으로 기업(본사, 공장, 연구소 택 1) 이전 또는 건립	협약일로 부터 1년 이내 부지매입	
충남도로 기업(본사, 공장, 연구소 택 1) 이전 또는 건립	협약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이전 또는 건립	

※ 위 사항 위반 시 사업비 환수 및 충청남도, 서천군, (재)충남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제한.

■ 문의처

구 분	담당자		연락처
사업 전반 및 신청, 평가 등 문의처	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	김영균 과장	041-330-0516
			dudrbs83@ctp.or.kr
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, 서천군에 본사/연구소/생산시설 이전 및 건립 문의처	서천군청 해양산업과	정준 주무관	041-950-4240
			ssin4302@korea.kr

1.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

사업명	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	지원금	70백만원 내외
기간	2023.11. ~ 2024.04	주관 연구기관	제한 없음
사업목표	○ 해양생물자원(식물·동물·미생물·수자원 등)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핵심성능(규명 및 활용 가능한 지표성분, 효능성분)을 지닌 전략소재 및 시제품 개발		
사업내용	○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확보 - 효능성분 규명 및 분석법 개발 - 원료의 규격화(시기별·부위별·원산지별 비교분석, 기원, 국내외 허가 및 상용화 사례, 유효성자료, 지표성분, 효능성분, 분석법, 유해성 등)		
	○ 성과지표		
	성과지표	목표치	비고 (설정근거, 평가기준 등)
	원료 규격화	1건 이상	원료 규격서(미생물, 중금속함량, 지표성분/ 효능성분 및 분석법)
	효능입증	1건	효능시험 완료
	(선택지표) SCI논문/ 특허	1건 이상	SCI 논문 또는 특허
	고용창출(신규채용)	1명/년	고용계약서
사업화 매출액	지원금의 3% 이상	사업을 통해 제작된 제품의 판매액 (판매원장 또는 세금계산서)	
지원조건	○ 대량확보가 가능한 원물 대상 ○ 선행연구결과 제시 및 대량확보 가능성 제시		
지원분야	○ 기능성 식품, 기능성 화장품, 의료기기(적용소재) 활용 대상		
기타	○ 규격화된 원료의 정보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“국립해양생물자원관” 지정된 DB에 업로드해야함 *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○ (가점사항) 지역대표 수산물 및 자원관 유용소재 활용 : 2점		

2. 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

사업명	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	지원금	55백만원 내외
기간	2023.11. ~ 2024.04	주관 연구기관	제한 없음
사업 목표	○ 해양생물자원(식물·동물·미생물·수자원 등)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 시제품 개발		
사업 내용	○ 해양바이오 산업화 시제품 개발 - 효능성분 규명 및 분석법 개발 - 핵심 성능(성분, 효능 등)이 규명된 기존 소재 활용 가능		
	○ 성과지표		
	성과지표	목표치	비고 (설정근거, 평가기준 등)
	안정성 평가	1건	공인시험성적서
	제형 개발	1건	시제품
	고용창출(신규채용)	1명/년	고용계약서
사업화 매출액	지원금의 3% 이상	사업을 통해 제작된 제품의 판매액 (판매원장 또는 세금계산서)	
지원 조건	○ 대량확보가 가능한 원물 대상 ○ 선행연구결과 제시 및 대량확보 가능성 제시		
지원 분야	○ 기능성 식품, 기능성 화장품, 의료기기(적용소재) 활용 대상		
기타	○ (가점사항) 지역대표 수산물 및 자원관 유용소재 활용 : 2점		